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44호로 2021년 12월 16일 이규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의원의 상해 보상 등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9조, 안 제13조 ~ 제15조)

나.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2.1.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의원의 상해보상 등 심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와 제5조는 의원의 상해 보상과 관련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이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 안 제9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 중 “구청 관련 국·과장 1명”을 “의회협력업무 소관 국장”으로, 안 제14조에서 심의회의 간사를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을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구체화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p>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p> <p>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p> <p>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영	개 정 영
<p>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p>	<p>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p>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p>

<p>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2. <u>여비</u>: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3. <u>월정수당</u>: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p> <p>2. <u>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u>: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p> <p>3. <u>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u>: <u>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u></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b>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b>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p>	<p><b>제37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b>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p>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  
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  
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안전 또는 시설관리 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환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